

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일부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2022년 12월 1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1월 10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12월 1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경제국장 한만석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2021. 11. 19. 시행됨에 따라, 필수업무종사자 정의 및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조항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·지원 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조례의 목적, 정의 정비(안 제1조, 제2조)
- “필수노동자”를 “필수업무 종사자”로 용어 변경(안 제3조 부터 제9조, 제12조, 제14조)

- 지원계획 수립 시기 특정(안 제6조)
-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(안 제9조)
- 위원회 소집사유를 구체화하고, 간사를 팀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(안 제12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#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#### 나. 검토의견

##### ① 개정배경

-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과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보건의료, 돌봄, 물류, 대중교통, 교육·환경 등 필수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른바 필수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.
- 이에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·지원대책을 발표하고(2020.12.14),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(2021.5.18)하였음(2021.11.19. 시행)
- 금천구는 정부보다 먼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(2020.12.31.)하였으나, 정부가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·시행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와 규정이 법률과 달라 조례의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.
- 이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법률과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# ② 종합의견

-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지원계획,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 있음

-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